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2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세무1과장 윤민선】

가. 제안이유

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일몰되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감면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·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인용 법령 변경 (안 제10조)
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⇒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2) 종과세 부동산 감면 제외대상 범위 명확화(안 제16조)
- 3) 반복적 문구 지양 및 간소화 등.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-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,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 법령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안을 조별로 살펴보자면, ‘안 제2조, 제14조의 2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, 제19조의 2’ 중에서의 ‘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’ 및 안 제10조의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‘법’으로 개정하여 동어 반복적 문구를 지양하는 등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있음.
- 또한, 안 제10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에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보유하는 재산’을 ‘보유하는 부동산’으로 하고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관하면서 문구를 상위법 용어대로 수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 역시 상위법의 조항에 호응하는 문구로 정비하고 있음. 이와 같은 정비 결과 감면 기간, 감면율 등은 기존 조례안과 동일하게 이관되어 개정되고 있음.
- 안 제16조(감면 제외대상)에서는 기존 ‘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’을 ‘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 각 호의 어느 부동산’으로 개정하고 있는바, 이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에 감면 제외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- 위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살펴본 바, 동 조례의 근거법의 규정에 부응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며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